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 <전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학문, 사상의 자유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참교육의 미래를 밝힐 예비교사들을 위해 대학의 자치를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나아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사회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제1국립 사범대학으로서의 책무를 간과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예비교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폭넓고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참여를 통해 건전한 대학문화의 정착과 학우중심의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사범대학 학생회 대의원은 사범대학 학우들의 의지와 결심을 모아 2017년 9월 13일, 사범대학 학생회칙을 개정 공포하는 바이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회원들의 학생활동을 통하여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예비교사들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학우중심의 학생회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 학생회를 조직기반으로 하며, 사범대학 학생총회, 사범대학 대의원총회,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사범대학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부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권리, 운영 전반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

진다.

- 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⑥ 본 회의 회원은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이뤄진 의결기구를 통해 본 회의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준수하고 본 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⑦ 휴학생은 회원의 권리 중 1항과 2항을 제한한다. 단, 휴학생임에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1항과 2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제3장 사범대학 학생총회

제6조(지위) 사범대학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7조(구성)

- ① 학생총회의 구성원은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궐위 시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본 회의 학생회장 탄핵 안건 상정 시, 학생총회의 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아닌 사범대학 대의원총회에서 인준 받은 임시의장 1인으로 한다.

제8조(권한)

- ① 학생총회는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학생총회는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9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학생총회의 의장, 사범대학 대의원의 1/2 이상, 사범대학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발의, 그리고 회원의 1/10 이상의 서명 발의가 있을 시 일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 ② 학생총회의 소집은 3일 전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③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전체 회원의 1/4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학생회장 탄핵 안건 상정 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사범대학 대의원총회

제11조(지위) 사범대학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2조(구성)

- ① 대의원은 본 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과 각 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 2, 3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단, 각 과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시, 1인만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 ②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본 회의 부학생회장이 된다. 단, 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③ 각 과의 4학년 대표를 특별위원으로 두며,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있다.

#### 제13조(권한 및 업무)

- ① 본 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결정권
- ② 사범대학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③ 본 회의 학생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권
- ④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확정권
- ⑤ 본 회의 학생회비의 책정 및 조정권
- ⑥ 본 회의 집행위원장 및 각 국장 인준 및 해임의결권
- ⑦ 각 급 학생회 회장, 부회장, 대의원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 ⑧ 각 급 학생회 운영위원, 집행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 및 시정명령권
- ⑨ 본 회의 산하기구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심의·의결권
- ⑩ 기타 대의원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권

#### 제14조(소집)

-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서명 발의 혹은 사범대학 운영위원 1/2의 발의로 소집한다.
- ④ 회의 소집 시, 안건을 명시하여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의결)

- ①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의원이 아닌 본 회의 회원은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제16조(탄핵 및 해임 의결)

- ① 각 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사범대 집행위원장 및 각 국장이 본 회의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사범대학에 관련한 직무 중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각 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사범대 집행위원장 및 각 국장의 해임의 경우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1/2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사범대 집행위원장 및 각 국장의 해임이 의결될 시 의장은 즉시 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 제5장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제17조(지위)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상설적 의결기구이며,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8조(구성)

- ① 본 회의 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 회의 부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은 각 과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9조(권한 및 업무) 운영위원회는 상설적인 최고 운영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본 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권
- ② 사범대학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③ 사범대학 대의원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④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 ⑤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권
- ⑥ 본 회의 특별기구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심의·의결권
- ⑦ 본 회의 산하기구 구성권
- ⑧ 기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의결권

제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① 정기 회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매 주 진행되며,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소집한다.
- ②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의결)

- ① 재적 학과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학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이 아닌 본 회의 회원은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제6장 사범대학 정·부학생회장

제22조(정학생회장의 지위) 본 회의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제23조(부학생회장의 지위) 본 회의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정학생회장의 권위 시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무) 정·부학생회장은 임기 간 본 회의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며, 본 회의 자치실현과 목적달성을 위해 헌신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가지며,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에 준한다.

- ① 본 회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책임
- ② 본 회의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주관
- ③ 본 회의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 ④ 본 회의 집행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시
- ⑤ 본 회의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학사 행정에 대해 학교 당국에 의견 제시
- ⑥ 그 밖의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

제26조(신분보장)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학생총회의 탄핵 안건을 통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7조(임기)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후 2학기 종강일 다음날로부터 다음년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본 회의 후임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시 임기를 3월 재선거까지 연장한다.

## 제7장 사범대학 집행위원회

제28조(지위) 사범대학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본 회의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구이다.

제29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의 필요에 따라 구성 및 임명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인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는다.
- ③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의 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인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는다.
-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장의 지시 하에 집행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 ① 본 회의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 ②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고유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③ 본 회의 학생회비 및 학생회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 ④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기구에서의 의사 개진권을 갖는다.
- ⑤ 각 집행국장은 본 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각 과 집행부와의 계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8장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31조(지위)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후 구성된다.

1. 본 회의 후임 학생회장 선거가 3월 재선거에도 무산 될 시
2.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사퇴 또는 탄핵 후, 해당 정·부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시

제3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과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제33조(권한 및 업무)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 인준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사범대학 학생회칙 4장 14조 3항에 따른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제9장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제35조(목적)

- ① 산하기구는 본 회의 산하에 소속되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특별기구는 본 회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업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설치)

- ① 산하기구는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하며, 본 회의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한다.
- ② 특별기구는 본 회의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한다.

제37조(위원장)

- ① 산하기구의 위원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이 임명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인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는다.
- ② 특별기구의 위원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는다.

제38조(해산)

- ① 산하기구는 대의원총회에서 해산 안건 상정 시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 ②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산 안건 상정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재정)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본 회의 재정의 일부로 사업을 진행한다.

## 제10장 과 학생회

제40조(지위) 과 학생회는 과 단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41조(구성)

- ① 과 학생회는 해당 과의 재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 ② 과 학생회는 본 회칙 및 과 학생회칙에 따른 과 학생회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한다.

제42조(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① 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과 학생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한다.
- ② 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 회칙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제11장 재정

제43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및 과별 분담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학생회의 활동에 사용한다.

제44조(회계연도)

-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 회의 학생회장단의 임기 시작일 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회계연도는 2기(세부적으로 4분기)로 나누어 각 학기별로 예·결산을 편성한다. 1, 2분기를 1기로, 3, 4분기를 2기로 정하며, 각각의 기간은 다음 호에 명시된 것을 따른다.
  1. 1분기 : 당선 후 2학기 종강일 다음날 ~ 1학기 개강일 전날
  2. 2분기 : 1학기 개강일 ~ 1학기 종강일
  3. 3분기 : 1학기 종강일 다음날 ~ 2학기 개강일 전날
  4. 4분기 : 2학기 개강일 ~ 2학기 종강일
- ③ 매년 선거 이후의 회계운영은 차기 학생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예산)

- ① 본 회의 학기별 예산은 매 학기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총회의 정식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회 1분기 예산의 경우,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 가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예산 사

용이 가능하다.

② 과 학생회는 본 회의 예산안 양식에 따라 학기별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학기 개강 후 첫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출한다. 이때, 예산안의 회계연도는 과 학생회장단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본 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6조(결산)

① 회계연도의 각 분기가 끝난 이후 10일 이내에 결산 내역을 공고하며, 심의 및 승인이 완료된 본 회의 결산 내역은 심의 결과와 함께 승인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공고한다.

② 본 회의 학기별 결산안은 총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심의 및 승인이 완료된 본 회의 결산은 승인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공고한다.

④ 과 학생회는 본 회의 결산안 양식에 따라 학기별 결산안을 작성하여 매 학기 종강 후 첫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출한다. 이때, 결산안의 회계연도는 과 학생회장단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본 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7조(감사)

① 본 회의 각 급 학생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본 회의에서 사범대 내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급 학생회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시행세칙 및 규정의 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 제12장 선거

제48조(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를 실시한다.

제49조(선거권) 본 회칙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제50조(피선거권)

①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 : 본 회의 회원 중 2학기 이상을 등록한 회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각 과의 정·부학생회장 : 각 과의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1조(선거시기) 본 회의 각급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의결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2조(선거방법)

①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 선거 : 본 회의 회원의 1/10 이상의 서면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과반수의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각 과의 정·부학생회장 선거 : 각 과의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거를 시행한다.

제53조(신임투표)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5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본 회의 후임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다.
- ②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사임, 탄핵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잔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잔임기간이 180일 이하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 ④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체계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
- ⑤ 재선거 및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5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사범대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사범대 선관위가 총괄한다.
- ③ 사범대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사범대 선관위는 본 회의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단과대학운영위원 중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6조(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은 사범대 선관위에서 제정하며 개정할 수 있다.

### 제13장 회칙개정

제57조(발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① 본 회의 회원 1/20 이상의 발의
- ②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 ③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제58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60조(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관련부서 및 관련회의에서 확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

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

제4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규정력을 가진다.

제5조 본 회의 산하기구 중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각 산하기구의 회칙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본 회의 회칙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 본 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